

의안번호	2211163
의 퇴 인	이해민 의원
회 답 일	2025. 9. 10.
추 계 번호	25F348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정보보호비용 및 정보보호 전문인력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4조제1항 (통합투자 세액공제)	○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투자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사업 화시설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제율 인상 －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투자에 대한 공제율(%): (현행) 기술별·기업규모별로 1~12 ※ 기술의 종류에 따라 일반 또는 신성장·원천기술 적용 → (개정안) 기술별·기업규모별로 15~25	
2	안 제104조36 (정보보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)	○ 기업이 정보보호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기업의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 신설 － 공제대상: 정보보호비용 ※ 정보보호 컨설팅 비용, 정보보호 관련 보험 가입 비용 등 － 공제율(%): 중소기업 5, 중견기업 3, 대기업 1 － 공제한도: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% － 적용기한: 2028.12.31.	
3	안 제104조의37 (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)	○ 기업이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 신설 － 공제요건: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고용하고, 다음 과세 연도말까지 고용유지 ※ 정보보호전문인력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기술인력으로, 정보보호 전담 업무를 수행하고, 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－ 1인당 공제액: 중소기업 1,000만원, 중견기업 600만원, 대기업 400만원 － 공제방식: 고용발생시점부터 2028년말이 속한 과세 연도까지 공제 지속 ※ 단,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중복적용 불가 － 적용기한: 2028.12.31.	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4조제1항 (통합투자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04조제36 (정보보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	안 제104조의37 (정보보호 전문인력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에 따라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인상하고, 정보보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,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신설함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24조제1항, 안 제104조의36 및 안 제104조의37)

○ 안 제24조제1항은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투자에 적용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현행 일반 또는 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해당되는 수준에서 국가전략기술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

－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술별·기업규모별로 차등적인 공제율을 적용

[표 1]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술별 공제율(당기분)

(단위: %)

	일반	신성장·원천기술	국가전략기술	
			반도체 외	반도체
중소기업	10	12	25	30
중견기업 ¹⁾	5~7.5	6~9	15~20	20~25
대기업	1	3	15	20

주: 1) 중견기업의 공제율 범위는 중소기업에서 전환된 이후 일정기간 동안 적용되는 우대공제율을 포함

- 개정안은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투자의 공제율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
 - ※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요건은 시행령 규정사항
 - ※※ (현행) 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 설비투자: 기업규모별 3~12%
 - 그 외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투자: 기업규모별 1~10%
 - (개정안) 기업규모별 15~25%
- 안 제104조의36은 기업이 정보보호 컨설팅 비용, 정보보호 관련 보험 가입 비용 등 정보보호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특례를 신설
 - 공제대상: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보호비용
 - ① 정보통신시설 및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보호대책 수립, 위험요인 평가, 모의해킹,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수행하는 업무용역을 이용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지출한 비용
 - ※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: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 및 평가업무, 보호대책의 수립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기업¹⁾
 - ②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보호 침해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보험료
 - ※ 정보보호 침해사고: 해킹, 컴퓨터바이러스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관련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²⁾
 - 공제율(%): 중소기업 5, 중견기업 3, 대기업 1
 - 공제한도: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%
 - 적용기한: 2028.12.31.
- 안 제104조의37은 기업이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고용할 경우, 고용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특례를 신설
 - 공제대상: 다음의 조건을 갖춘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고용하여 다음 과세연도말까지 유지한 기업
 - ①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기술인력
 - ② 정보보호 전담인력으로 정보보호 관련 업무 수행
 -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
 - 공제액(1인당, 만원): 중소기업 1,000, 중견기업 600, 대기업 400

1) 「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정보보호산업법') 제23조

2)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정보통신망법') 제2조제7호

※ 해당 공제는 2028년말이 속한 과세연도까지 지속되며,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
 - 적용기한: 2028.12.31.

- 안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에 대한 기업규모별 투자금액과 생산비용 규모 등을 추정해야 하나,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의 요건 등 시행령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- 개정안에 따른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로 인정되는 투자의 범위 등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현행 대비 공제율이 상승하는 투자금액의 범위를 산출할 수 없음
 - 「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³⁾에서는 정보보호 시스템을 “정보처리시스템 내 정보를 유출·위조·변조·훼손하거나 정보처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로부터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및 프로그램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, 세부적인 장비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
 - 또한,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 대상이 되는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투자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향후 공제금액을 추계할 수 없음
 - 참고로,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「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」(2024.10.)에 따르면, 2023년 기준 정보보안 기업은 연평균 8.5억원 수준으로 설비투자하고 있으나, 건물 등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닌 품목을 구분한 투자 정보는 부재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제액을 추계할 수 없음

[표 1] 정보보안 기업의 연도별 기술개발 투자액 현황

(단위: 개, 억원)

구분	2023년		2024년(전망)	
	기업수	투자액 평균	기업수	투자액 평균
전체 투자액 (연구개발/건물/기계/설비 등)	248	8.5	247	8.9
매출액 대비 투자 비율	10.7		9.3	

자료: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, 「2024년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」, 2024.10.

- 안 제104조의36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기업이 지출하는 정보보호 컨설팅 비용 및 정보보호 보험료 등의 규모 등을 추정해야

3) 「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」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-7호, 시행: 2017.8.24.)

하나, 추정의 기초자료가 부재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- 신설조항에 따른 공제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기업별로 정보보호 컨설팅 비용 및 정보보호 보험료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현황 등의 기초자료가 필요하나, 자료가 부재하여 향후 공제대상이 되는 비용을 추계할 수 없음
 - － 참고로, 「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」에 따르면, 2023년말 기준 정보보안 컨설팅 산업의 총매출은 5,953억원 수준이지만, 이를 지출한 거래기업의 기업규모나 개별 비용지출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제액을 추계할 수 없음

[표 2] 정보보안 관련 서비스 산업중분류별 매출현황

(단위: 억원)

산업	보안컨설팅	보안시스템 유지관리 등	보안관제 서비스	보안교육 및 훈련 서비스	보안인증 서비스	계
매출액	5,953	6,645	3,757	500	637	17,491

자료: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, 「2024년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」, 2024.10.

□ 안 제104조의37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기업규모별 정보보호 전문인력 고용 규모를 추정해야 하나, 정보보호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요건 등 시행령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추정의 기초자료가 부재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- 개정안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요건인 자격기준 등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정보보호 전문인력으로 규정될 수 있는 인원의 범위를 추정할 수 없음
- 또한, 기업규모별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고용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부재하여 향후 공제대상이 되는 인력 규모를 추계할 수 없음
 - － 참고로, 정보보호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2023년말 기준 6만명 수준이나, 이 중 정보보호 전문 자격증 소지자의 비중, 정보보호 전담인원 비중 등과 관련된 정보가 부재하여 공제대상을 추계할 수 없음

[표 3] 정보보호산업 종사인원 현황

(단위: 명)

구분	정보보안	물리보안	계
2023년말	23,947	36,361	60,308

자료: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, 「2024년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」, 2024.10.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